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999. 9. 16.

총무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9년 9월 9일 마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1999년 9월 9일
- 다. 상정일자 : 제64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 ('99. 9. 16.)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총무과장 조성대

가. 개정이유

자치역량 강화와 경쟁력 중심으로의 혁신을 통하여 구정의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효율적인 구정운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구본청의 기구를 개편하고,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시범동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행정관리국 소속 민방위재난관리과를 폐지하고, 민방위계획업무 및 민방위대설치·조직 편성과 교육, 인력동원에 관한 사무를 총무과로 이관함(안 제4조 제1항 및 제2항)
- 기획재정국 소속 지적과를 도시관리국 소속으로 변경하면서 소관사무도 따라서 이관함 (안 제5조제1항및제2항, 안 제7조제1항및제2항)
- 도시관리국 소속 공원녹지과를 폐지하고, 동 사무를 건설교통국 토목과로 이관함 (안 제8조제2항)
- 폐지되는 행정관리국 소속 민방위재난관리과 사무중 도시방재 종합대책, 지역안전관리, 재난관리사무를 하수과로 이관함(안 제8조 제2항)

- 동기능 전환 시범동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의 2)
 - 1) 동기능전환 시범동을 도화제1동과 합정동으로 정함
 - 2) 시범동의 존치사무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 기구통폐합및 동 기능전환 시범동 운영에 따른 이관사무에 대한 승계및 개정내용과 관련된 다른 조례개정을 부칙으로 정함(안 부칙 제2조 내지 제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 관 수)

- 동 개정조례안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지방자치단체 2단계 구조조정 추진지침에 의하여 마포구 본청의 행정기구를 축소 개편하고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시범동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사료됨.
- 주요개정골자는 안 제4조에서 행정관리국 소속의 민방위재난관리과를 삭제 폐지하고 현행 민방위재난관리과의 민방위계획업무와 민방위교육훈련업무를 총무과로 흡수하여 행정관리국장의 분장사무로 하고, 경찰서에서 업무이관된 노래연습장 등록관리 및 무도장·무도학원 신고 및 관리업무와 공덕역에 설치예정인 현장민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이 행정관리국장의 분장사무로 신설되었으며, 안 제5조에서는 기획재정국 소속의 지적과를 도시관리국 소속으로 변경함에 따라 삭제하고, 기획재정국장의 분장사무였던 지적과 업무를 삭제하였음.
- 안 제7조에서는 도시관리국 소속에 지적과를 신설하고, 공원녹지과를 건설교통국 소속의 토목과로 흡수하기 위하여 삭제하였으며, 현행 공원녹지과 업무는 도시관리국장의 분장사무에서 삭제하였고, 지적과가 도시관리국 소속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적과 업무를 도시관리국장의 분장사무로 신설하였음.
- 안 제8조에서는 건설교통국장의 분장사무로 골재채취업에 관한 사항과 건설업에 관한 사항이 추가로 신설되었으며, 도시관리국 소속의 공원녹지과가 토목과로 흡수됨에 따라 공원녹지업무가 신설되었고, 폐지되는 민방위재난관리과의 민방위재난업무와 안전지도업무가 하수과로 흡수됨에 따라 건설교통국장의 분장사무로 신설되었음.
- 안 제14조의2는 행정자치부의 읍면동 사무소 기능전환 기본계획에 의거 주민자치센터로 동사무소 기능이 전환됨에 따라 시범실시를 위한 시범동(도화제1동, 합정동)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신설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부칙 안 제1조에는 시범동 실시를 '99. 12.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부칙 안 제3조에는 시범동의 일부사무가 구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시범동의 사무가 아닌 사무에 대해서는 시범동(도화제1동, 합정동)의 동장을 제외하도록 다른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음.

- o 이상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는 지역적 특성과 행정 여건 등을 세밀하게 진단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는 사료되나, IMF체제하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지방자치단체 2단계 구조조정은 지역특성과 행정 여건 등을 고려치 않고 일률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일부 의견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집행기관에서는 추후, 행정기구를 개편할 시에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지역 특성과 행정 여건 등이 반영된 엄밀한 조직잔단을 통해서 행정기구가 개편되도록 하므로써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적인 구행정이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지난 '99. 9. 9일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4의 규정에는 특별시의 자치구 중 인구 50만 미만의 구는 실·국이 5개 이내, 실·과·담당관이 21개 이내로 설치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5국 20개과 1담당관으로 개편하려는 동개정조례안은 법령의 개정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 안 의 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	--

제출일자 : 1999. 9.
제출자 :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자치역량 강화와 경쟁력 중심으로의 혁신을 통하여 구정의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효율적인 구정운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구본청의 기구를 개편하고,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시범동 운영을 위하여 본조례를 개정코자하는 것임.

2. 주요개정골자

- 가. 행정관리국소속 민방위재난관리과를 폐지하고, 민방위계획업무 및 민방위대설치·조직편성과 교육, 인력동원에 관한 사무를 총무과로 이관함(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
- 나. 기획재정국소속지적과를 도시관리국 소속으로 변경하면서 소관사무도 따라서 이관함(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
- 다. 도시관리국 소속 공원녹지과를 폐지하고, 동 사무를 건설교통국 토목과 사무로 이관함(안 제8조제2항)
- 라. 폐지되는 행정관리국소속 민방위재난관리과 사무중 도시방재 종합대책, 지역안전관리, 재난관리사무를 하수과로 이관함(안 제8조제2항)
- 마. 동기능 전환 시범동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 14조의2)
 - (1) 동기능전환 시범동을 도화제1동과 합정동으로 정함
 - (2) 시범동의 존치사무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바. 기구통폐합 및 동 기능전환시 범동운영에 따른 이관사무에 대한 승계 및 개정내용과 관련된 다른 조례개정을 부칙으로 정함(안 부칙 제2조 내지 제3조)

3. 조례안(별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1999.8.31. 법률 제6002호)제15조, 제102조, 제104조, 제111조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1998.8.31 대통령령 제15875호)제10조

나. 예산조치 : 필요없음

다. 협 의 : 동 이관사무와 관련된 부서의 장과 합의

라. 기 타 : 해당없음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문화체육과·민원봉사과 및 민방위재난관리과를 둔다”를 “문화체육과 및 민원봉사과를 둔다”로 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행정관리국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인사·조직·보안에 관한 사항
2. 보수·연금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3. 청사건물의 유지관리 보수에 관한 사항
4. 의식·회의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5. 선거 및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
6. 지방의회·동행정에 관한 사항
7. 민방위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8. 전시운영계획의 수립·시행 및 민방위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9. 민방위대 설치·조직편성·동원에 관한 사항
10. 민방위 교육 및 인력 동원에 관한 사항
11. 공보행정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12. 공보 및 보도에 관한 사항
13.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
14. 관광 및 문화재에 관한 사항
15. 생활체육·전전생활진흥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6. 체육시설업 신고·등록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7. 유기장업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8. 노래연습장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19. 무도장·무도학원업 신고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0. 국민운동의 계획수립 및 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1. 새마을 관련조직의 육성 및 관리등에 관한 사항
22. 바르게살기협의회 조직 육성 및 관리등에 관한 사항
23. 자연보호협의회 조직 육성 및 관리등에 관한 사항
24. 문서·관인·민원상담 및 민원안내에 관한 사항
25. 각종 민원서류의 접수처리·장표 및 자료의 보관과 열람에 관한 사항
26. 제증명의 발급·진정의 접수처리·호적에 관한 사항
27. 현장 민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
28. 구·동 민원업무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9. 병사에 관한 사항
30. 담당관 및 다른 국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5조제1항중 “세무1과·세무2과 및 지적과를 둔다”를 “세무1과 및 세무2과를 둔다”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제21호 내지 제28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제1항중 “건축과 및 공원녹지과를 둔다”를 “건축과 및 지적과를 둔다”로 한다.

제7조제2항중 제16호내지 제21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16호내지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16. 건축신고 사무에 관한 사항
17. 지적업무의 기획 및 조정총괄
18. 지적전산·지적측량에 관한 사항
19. 토지이용정리에 관한 사항
20. 택지소유상한규제 및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사항
21. 지가조사에 관한 사항
22. 토지거래 허가·신고에 관한 사항
23. 부동산 중개업 허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4. 건축물관리대장 관리·증명에 관한 사항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건설교통국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로·지하도·하천·구거 기타 공공용지의 사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골재채취업에 관한 사항
3. 전설업에 관한 사항
4.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5. 토지의 사용·수용에 관한 사항
6. 환경순찰의 확인 및 가로장애물 제거에 관한 사항
7. 옥외광고물관리 및 도시경관 개선에 관한 사항
8. 도로 및 토목공사의 계획 수립 및 집행
9. 도로 및 보도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0.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의 관리
11. 지하도·지하광장·터널 및 그 부속물의 유지관리
12. 공원·녹지관리의 총괄
13.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14. 조수보호등에 관한 사항
15. 도시공원조성 및 시설유지관리
16. 공원녹지대조성 및 시설유지관리
17. 개발제한구역 관리 총괄
18. 생활체육·건전생활관련시설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9. 하수행정의 종합 조정
20. 하수도·하천 및 유수지의 건설·유지관리
21. 수방대책에 관한 사항
22. 배수펌프장 및 배수시설의 관리
23. 하수도사용료 체납 징수 및 지하수 관리에 관한 사항
24. 분류하수관로 시설의 유지관리
25. 도시방재종합대책계획 수립 및 총괄조정
26. 지역안전관련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7. 재난관리기획·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8. 지역교통 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
29. 자동차 동원 및 특별수송대책에 관한 사항
30. 자동차 운수사업의 인·허가에 관한 사항
31. 자동차 정비업체 관리에 관한 사항
32. 자동차등록에 관한 사항
33. 방치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34. 자동차 검사에 관한 사항

35. 자동차 운수사업의 인·허가 사항과 관련된 법규위반 단속에 관한 사항
36. 주·정차 위반 단속에 관한 사항
37. 주차장 설치허가 및 관리 지도등에 관한 사항
38.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39. 주차장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동사무소 기능전환 시범동 운영 등) ① 저비용·고효율의 지방행정체계를 구축하고, 동사무소의 여유시설·공간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여 주민의 문화·복지 및 편의시설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동사무소 기능전환을 추진함에 있어 본격적인 시행이전에 시범실시를 위한 동 기능전환 시범동(이하 “시범동”이라 한다.)을 운영한다.

② 시범동은 도화제1동과 합정동으로 한다.

③ 시범동의 사무중 일부는 구본청 또는 보건소로 이관하며, 시범동의 분장사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1999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하되, 다만, 제14조의2 개정규정은 199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관사무에 대한 조치등) ① 이 조례 시행당시 구본청 과의 국소속 변경, 폐지등으로 소관사무의 이동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개정내용 및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과에서 각각의 소관 사무를 승계한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시범동의 사무중 이관 사무에 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본청 또는 보건소의 담당관·과에서 각각의 소관 사무를 승계한다.

③ 이 조례의 개정에 불구하고, 각각의 개별법령에 동장이 행하여야 할

사무가 있는 경우에는 시범동 운영에 따른 시범동장이 행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제8조제1항중 “동장”다음에 “(도화제1동장과 합정동장은 제외)”를 추가한다.

② 서울특별시마포구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관련, [별표] “위임사무”的 주관국란 행정관리국(총무과)의 사무 명란중 “제2호” 및 주관국란중 도시관리국(건축과)란을 각각 삭제한다.

③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동장”다음에 “(도화제1동장과 합정동장은 제외)”를 추가한다.

④ 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동장”다음에 “(도화제1동장과 합정동장은 제외)”를 추가한다.

⑤ 서울특별시마포구청소년지도위원회의위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동장”다음에 “(도화제1동장과 합정동장은 제외)”를 추가한다.

⑥ 서울특별시마포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동장”다음에 “(도화제1동장과 합정동장은 제외)”를 추가한다.

⑦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및 제2항, 제25조제2항과 제27조제2항 내지 제4항중 “동장”

다음에 "(도화제1동장과 합정동장은 제외)"를 추가한다.

⑧ 서울특별시마포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중 "동장"다음에 "(도화제1동장과 합정동장은 제외)"를 추가한다.

⑨ 서울특별시마포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을 "하수과장"으로 한다.

⑩ 서울특별시마포구통·반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동장"다음에 "(도화제1동장과 합정동장은 제외)"를 추가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행정관리국) ① 행정관리국에 총무과·문화체육과·민원봉사과 및 민방위재난관리과를 둔다.</p> <p>② 행정관리국장의 부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사·조직·보안에 관한 사항 2. 보수·연금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3. 청사건물의 유지관리 보수에 관한 사항 4. 의식·회의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5. 선거 및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 6. 지방의회·동행정에 관한 사항 7. 공보행정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8. 공보 및 보도에 관한 사항 9.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 10. 관광 및 문화재에 관한 사항 11. 생활체육·건전생활진흥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2. 체육시설업 신고·등록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3. 유기장업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4. 국민운동의 계획수립 및 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15. 새마을 관련조직의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6. 바르게살기협의회 조직 육성 및 관리등에 관한 사항 17. 자연보호협의회 조직 육성 및 관리등에 관한 사항 	<p>제4조(행정관리국) ① 문화체육과 및 민원봉사과를 둔다.</p> <p>② 행정관리국장의 부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사·조직·보안에 관한 사항 2. 보수·연금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3. 청사건물의 유지관리 보수에 관한 사항 4. 의식·회의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5. 선거 및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 6. 지방의회·동행정에 관한 사항 7. 민방위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8. 전시운영계획의 수립·시행 및 민방위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9. 민방위대 설치·조직편성·동원에 관한 사항 10. 민방위 교육 및 인력 동원에 관한 사항 11. 공보행정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12. 공보 및 보도에 관한 사항 13.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 14. 관광 및 문화재에 관한 사항 15. 생활체육·건전생활진흥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6. 체육시설업 신고·등록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7. 유기장업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현 행	개 정 안
18. 문서·파인·민원상담 및 민원안내에 관한 사항	18. 노래연습장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19. 각종 민원서류의 접수처리·장표 및 자료의 보관과 열람에 관한 사항	19. 무도장·무도학원업 신고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0. 제증명의 발급·진정의 접수처리·호적에 관한 사항	20. 국민운동의 계획수립 및 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1. 구·동 민원업무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1. 새마을 관련조직의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22. 병사에 관한 사항	22. 바르게살기협의회 조직 육성 및 관리등에 관한 사항
23. 민방위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3. 자연보호협의회 조직 육성 및 관리등에 관한 사항
24. 전시운영계획의 수립·시행 및 민방위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4. 문서·파인·민원상담 및 민원안내에 관한 사항
25. 민방위대 설치·조직편성·동원에 관한 사항	25. 각종 민원서류의 접수처리·장표 및 자료의 보관과 열람에 관한 사항
26. 민방위 교육 및 인력 동원에 관한 사항	26. 제증명의 발급·진정의 접수처리·호적에 관한 사항
27. 도시방재종합대책계획 수립 및 출발조정	27. 혁장 민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
28. 지역안전관련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8. 구·동 민원업무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9. 재난관리기획·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9. 병사에 관한 사항
30. 담당관 및 다른 국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30. 담당관 및 다른 국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현 행	개 정 안
<p>제5조(기획재정국) ① 기획재정국에는 기획예산과·재무과·세무1과·세무 2과 및 지적과를 둔다.</p> <p>② 기획재정국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20(생략)</p> <p>21. 지적업무의 기획 및 조정 총괄</p> <p>22. 지적 저작·지적증량에 관한 사항</p> <p>23. 토지 이용정책에 관한 사항</p> <p>24. 택지소유상한규제 및 개발이익환 수에 관한 사항</p> <p>25. 지가조사에 관한 사항</p> <p>26. 토지거래허가·신고에 관한 사항</p> <p>27. 부동산 중개업 허가 및 지도감독 에 관한 사항</p> <p>28. 건축물관리대장 관리·증명 발급 에 관한 사항</p>	<p>제5조(기획재정국) ①----- ----- 세무1과 및 세무2과를 둔다.</p> <p>②-----</p> <p>1~20(현행과 같음)</p> <p>(삭제)</p>
<p>제7조(도시관리국) ① 도시관리국에 주 택과·도시개발과·건축과 및 공원녹 지과를 둔다.</p> <p>② 도시관리국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15(생략)</p> <p>16. 공원·녹지관리의 총괄</p> <p>17.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p> <p>18. 도시공원조성 및 시설유지관리</p> <p>19. 공원녹지대조성 및 시설유지관리</p> <p>20. 개발제한구역관리총괄</p> <p>21. 생활체육·건전생활관련시설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p>	<p>제7조(도시관리국) ①----- ----- 건축과 및 지적과를 둔다.</p> <p>②-----</p> <p>1~15(현행과 같음)</p> <p>(삭제)</p>

현 행	개 정 안
(신설)	16. 건축신고 사무에 관한 사항 17. 지적업무의 기획 및 조정총괄 18. 지적전산·지적측량에 관한 사항 19. 토자이용정리에 관한 사항 20. 택지소유상한규제 및 개발이익 회수에 관한 사항 21. 지가조사에 관한 사항 22. 토지거래 허가·신고에 관한 사항 23. 부동산 중개업허가 및 지도감독 에 관한 사항 24. 건축물관리대장 관리·증명에 관 한 사항
제8조(건설교통국)①(생략) ②건설교통국장의 부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조(건설교통국)①(현행과 같음) ②건설교통국장의 부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지하도·하천·구거 기타 공공용지의 사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접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3. 토지의 사용·수용에 관한 사항
4. 환경순찰의 확인 및 가로장애물 제거에 관한 사항
5. 옥외광고물관리 및 도시경관 개선에 관한 사항
6. 도로 및 토목공사의 계획 수립 및 집행
7. 도로 및 보도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8.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의 관리
9. 지하도·지하광장·터널 및 그 부속물의 유지관리
10. 하수행정의 종합 조정

1. 도로·지하도·하천·구거 기타 공공용지의 사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골재채취업에 관한 사항
3. 건설업에 관한 사항
4. 접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5. 토지의 사용·수용에 관한 사항
6. 환경순찰의 확인 및 가로장애물 제거에 관한 사항
7. 옥외광고물관리 및 도시경관 개선에 관한 사항
8. 도로 및 토목공사의 계획 수립 및 집행
9. 도로 및 보도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0.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의 관리

현 행	개 정 안
11. 하수도·하천 및 유수지의 건설·유지관리	11. 지하도·지하펌프·터널 및 그 부속물의 유지관리
12. 수방대책에 관한 사항	12. 공원·녹지관리의 총괄
13. 배수펌프장 및 배수시설의 관리	13.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14. 하수도사용료 체납 징수 및 지하수 관리에 관한 사항	14. 조수보호등에 관한 사항
15. 분류하수관로 시설의 유지관리	15. 도시공원조성 및 시설유지관리
16. 지역교통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	16. 공원녹지대조성 및 시설유지관리
17. 자동차 동원 및 특별수송대책에 관한 사항	17. 개발제한구역 관리 총괄
18. 자동차 운수사업의 인·허가에 관한 사항	18. 생활체육·전적생활관련시설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9. 자동차 정비업체 관리에 관한 사항	19. 하수행정의 종합 조정
20. 자동차등록에 관한 사항	20. 하수도·하천 및 유수지의 건설·유지관리
21. 방치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21. 수방대책에 관한 사항
22. 자동차 검사에 관한 사항	22. 배수펌프장 및 배수시설의 관리
23. 자동차 운수사업의 인·허가 사항과 관련된 법규위반 단속에 관한 사항	23. 하수도사용료 체납 징수 및 지하수 관리에 관한 사항
24. 주·정차 위반 단속에 관한 사항	24. 분류 하수관로 시설의 유지관리
25. 주차장 설치허가 및 관리 지도등에 관한 사항	25. 도시방재 종합대책계획 수립 및 총괄조정
26.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26. 지역안전관련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7. 주차장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27. 재난관리기획·운영 및 평가에 관한 시행

현 행	개 정 안
(신설)	<p>28. 지역교통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p> <p>29. 자동차 동원 및 특별수송대책에 관한 사항</p> <p>30. 자동차 운수사업의 인·허가에 관한 사항</p> <p>31. 자동차 정비업체 관리에 관한 사항</p> <p>32. 자동차등록에 관한 사항</p> <p>33. 방지차량관리에 관한 사항</p> <p>34. 자동차 검사에 관한 사항</p> <p>35. 자동차 운수사업의 인·허가 사항과 관련된 법규위반 단속에 관한 사항</p> <p>36. 주·점차 위반 단속에 관한 사항</p> <p>37. 주차장 설치허가 및 관리·지도 등에 관한 사항</p> <p>38. 불법 주·점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p> <p>39. 주차장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p> <p><u>제14조의2(동사무소 기능 전환 시범동 운영등)</u> ① 저비용·고효율의 지방 행정체계를 구축하고, 동사무소의 여유시설·공간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여 주민의 문화·복지 및 편의시설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동사무소 기능 전환을 추진함에 있어 보격적인 시행 이전에 시범실시를 위한 동기능전환 시범동(이하 "시범동"이라 한다.)을 운영한다.</p> <p>② 시범동은 도화제1동과 합정동으로 한다.</p> <p>③ 시범동의 사무중 일부는 구본청 또는 보건소로 이관하며, 시범동의 부장사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